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4. 1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4월 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4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4년 4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2013.7.16)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형음식점의 무계형 수수료에 선진형종량제인 스티커(바코드형) 부피형 종량제 수수료를 추가 적용하여 향후 음식점에 선진형 종량제 적용을 준비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3 및 별지 제1호 서식)
 - 2013.7.16 폐기물관리법 상 삭제된 법 제15조제3항(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을 조례 상 적용 제외하고 신설된 법 제15조의2(음식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를 조례 상 인용조문 반영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과 태료 부과기준 등 개정사항 반영

- 선진형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른 수수료안 마련 (안 별표 2)
 - 200m² 미만 소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현 행) kg당 114원의 무게형 종량제 일괄 적용
(개 정) kg당 114원의 무게형 종량제, 부피형 종량제 리터당 90원(신설)
- 수수료 감면의 구체적 방안 마련 (안 제10조의2)
 - 종량제 배출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조례 제10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에 추가하여 현물 또는 현금의 방식으로 감면지원 구체화 방안 조례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현행 조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운반 수수료 감면지원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감면대상자에게 일괄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나, RFID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감면자인 경우에는 지원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감면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감면대상자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일반 음식점소(200m²미만) 및 상가에 kg당 114원으로 일괄 적용했던 무게형 종량제 수수료 부과기준을 ℓ 당 90원으로 부피형 종량제 수수료를 추가함으로써 종량제 시행방식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 서식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조례개정에 따른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 주민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89 호
----------	---------

제출연월일 : 2014.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2013.7.16)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형음식점의 무게형 수수료에 선진형종량제인 스티커(바코드형) 부피형 종량제 수수료를 추가 적용하여 향후 음식점에 선진형 종량제 적용을 준비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3 및 별지 제1호 서식)

- 2013.7.16 폐기물관리법 상 삭제된 법 제15조제3항(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을 조례 상 적용 제외하고 신설된 법 제15조의2(음식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를 조례 상 인용조문 반영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개정사항 반영

나. 선진형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른 수수료안 마련 (안 별표 2)

- 200㎡ 미만 소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현 행) KG당 114원의 무게형 종량제 일괄 적용
(개 정) KG당 114원의 무게형 종량제, 부피형 종량제 리터당 90원(신설)

다. 수수료 감면의 구체적 방안 마련 (안 제10조의2)

- 종량제 배출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조례 제10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에 추가하여 현물 또는 현금의 방식으로 감면지원 구체화 방안 조례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5조의2, 제6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2.27.~2014.3.19,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구 홈페이지를”을 “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으로 하고 “주민에게”를 “ 연 1회 이상 주민에게”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 및 지원할 때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단위	수수료	수집·운반비	처리비	비 고
부피형 종량제	1 ℓ	60원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대행업체와의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 판매수수료 : 수수료(가격)에 포함
	2 ℓ	120원			
	3 ℓ	180원			
	5 ℓ	300원			
	10 ℓ	600원			
	20 ℓ	1,200원			
	100 ℓ	6,000원			
무게형 종량제	kg당	75원			※ 김장철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시기에 는 20ℓ, 100ℓ의 부피 형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일반음식업소 및 상가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kg당	114원			
	ℓ당	90원			
다량배출사업장	별도 계약으로 정함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의2)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나.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라.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u>구 홈페이지</u>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u>주민에게</u>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 1. ~ 3. (생략)</p> <p>⑥ (생략)</p> <p><u>〈신 설〉</u></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 ----- -----.</p> <p>② ----- ----- <u>구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u> ----- -----<u>연 1회 이상 주민에게</u>----- -----.</p> <p>③ ~ ⑤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u>제10조의2(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원)</u>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 및 지원할 때에는 <u>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단위	수수료	수집·운반비	처리비	비고	구분	단위	수수료	수집·운반비	처리비	비고
부피형 종량제	1ℓ	60원	수집·운반비와 차비는 대량업체의 별도 계약으로 정함	※ 감장철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채출 시에는 20ℓ, 100ℓ의 부피형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 판매수수료 :수수료(가격) 에 포함	부피형 종량제	1ℓ	60원	수집·운반비와 차비는 대량업체의 별도 계약으로 정함	※ 감장철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채출 시에는 20ℓ, 100ℓ의 부피형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 판매수수료 :수수료(가격) 에 포함
	2ℓ	120원					2ℓ	120원			
	3ℓ	180원					3ℓ	180원			
	5ℓ	300원					5ℓ	300원			
	10ℓ	600원					10ℓ	600원			
	20ℓ	1,200원					20ℓ	1,200원			
	100ℓ	6,000원					100ℓ	6,000원			
무게형 종량제	kg당	75원				무게형 종량제	kg당	75원			
일반음 식업소 및 상가 (다량배 출사업 장 제외)	kg당	114원				일반음 식업소 및 상가 (다량배 출사업 장 제외)	kg당	114원			
	ℓ당	90원					ℓ당	90원			
다량배 출사업 장		별도 계약으로 정함				다량배 출사업 장		별도 계약으로 정함			

현 행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범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개 정 안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범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2)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나.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라.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